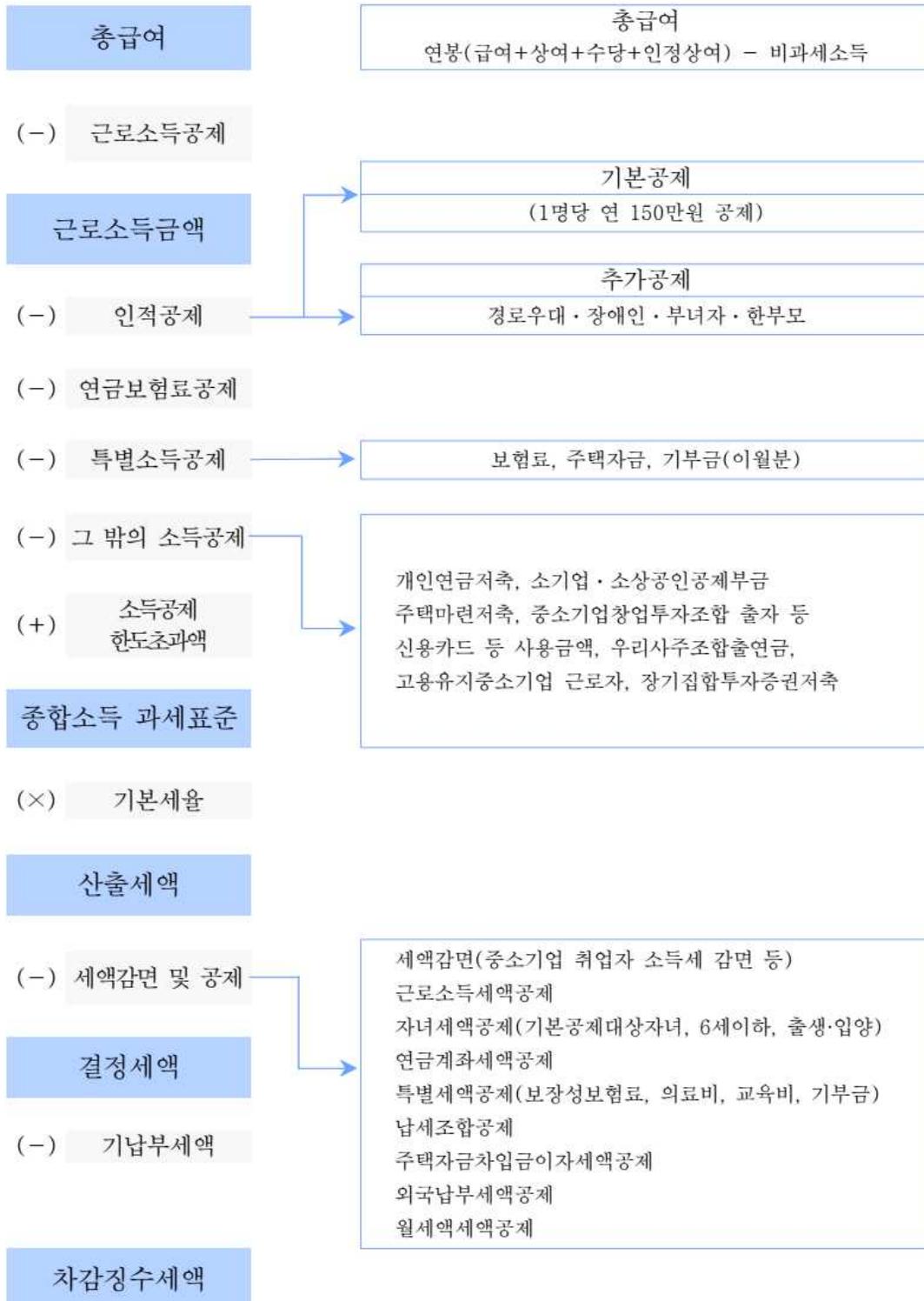


2017 연말정산

세무그룹 리엔

I. 이론

1. 소득세 산출 흐름



2. 연말정산이란

매월 근로소득에 대해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다음 해 2월에 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실제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고, 추가 징수할 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3. 소득공제 세액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인적공제 (기본공제/추가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연금 보험료 공제 (공적연금)	자녀 세액공제
특별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보험료 공제(건강/고용)	특별세액공제
주택자금공제	보험료
기부금 이월분 공제	의료비
그 밖의 소득공제	교육비
개인연금저축 (2000년 이전 가입)	기부금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외국납부세액
주택마련저축	주택자금차입금이자 세액공제
투자조합출자	월세액 세액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장기 집합투자증권 저축	

4. 항목별 주요사항

(1) 소득공제

1) 인적공제

① 기본공제

다음의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2017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구분	나이 요건	소득요건	
거주자 본인	해당 없음	해당 없음	
거주자의 배우자	해당 없음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거주자 (그 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57년생)
	직계비속과 동거 입양자		만 20세 이하 (97년생)
	형제자매		만 60세 이상 또는 만 20세 이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해당 없음
	위탁 아동		만 18세 미만

②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2017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다음의 금액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구분	추가공제 사유	1명당 공제금액
경로 우대자 공제	만 70세 이상인 경우 (47년생)	연 100만원
장애인 공제	장애인인 경우	연 200만원
부녀자 공제	거주자 본인(종합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이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연 50만원
한 부모 공제	거주자 본인이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

2) 주택자금공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함)가 다음 중 해당 사항을 신청한 경우에는 2017년 종합소득금액에서 해당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공제액	한도액
국민주택규모 주택임차자금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지급액×40%	연 300만원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연 240만원 이내)	지급액×40%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전액	연 300~1800만원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 공제대상자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해당 과세기간에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공제대상 주택자금

2017년에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 (연 240만원 한도)

다만, 주택 당첨 외의 사유로 중도 해지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음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 공제대상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가 주택자금소득공제를 받지 않을 때는 세대의 구성원도 가능)

✓ 공제대상 주택자금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능)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 공제대상자

취득 당시 무주택 세대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의 세대주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을 때는 세대의 구성원도 가능)

✓ 공제대상 주택자금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

3)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 공제대상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함)가 2017.12.31.까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 2017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 공제대상액

거주자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음)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입양자(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은 자는 제외함)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소득공제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 = 1) + 2)

1) 기본공제액 = Min (① , ②)

① 신용카드 등 공제액의 합계액

② 한도 :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한도액
7천만원 이하	Min(연간 300만원, 총급여액×20%)
7천만원 초과 1억 2천만원 이하	연간 250만원 (2017.12.31.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에는 연간 300만원)
1억 2천만원 초과	연간 200만원

2) 추가공제액 = Min (① , ②)

① 기본공제의 한도초과금액 : 1)의 ①-②

② 전통시장사용분 Min(사용금액×30%, 연간 100만원 한도)

+ 대중교통 이용분 Min(사용금액×30%, 연간 100만원 한도)

□ 공제배제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① 사업소득 관련 비용 또는 법인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 ② 가공신용카드 또는 위장가맹점명의 사용액 등 비정상적인 신용카드 등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③ 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 단,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한다.
- ④ 보험료 또는 공제료
- ⑤ 교육비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대학원 등) 단, 사설학원 수강료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대상이 된다.
- ⑥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중고자동차 제외)의 구입비용
- ⑦ 국제,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등 각종 공공금, 아파트관리비, TV 시청료, 도로통행료

- ⑧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 ⑨ 리스료 (자동차대여료 포함)
- ⑩ 국외에서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 ⑪ 우체국 택배, 부동산임대업 등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
합(의료기관 보건소 제외)에 지급하는 사용료, 수수료 등
- ⑫ 금융 보험용역 관련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등
- ⑬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정치자금
- ⑭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2) 세액공제

1) 자녀 세액공제

가. 기본공제대상 자녀

공제대상 및 요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공제대상 자녀(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로 입양자, 위탁아동 포함)에 대해서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

세액공제액

자녀의 수	세액공제금액
1명	연 15만원
2명	연 30만원
3명	연 30만원 + 2명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 (3명 60만원, 4명 90만원)

나. 6세 이하 공제대상자녀

공제대상 및 요건

6세 이하의 공제대상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세액공제액

1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15만원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다. 출생·입양 공제대상자녀

공제대상 및 요건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세액공제액

출생 또는 입양 신고한 자녀	세액공제금액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70만원

2) 의료비 세액공제

□ 공제대상 및 요건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소득요건 제한 없음)를 위해 당해 연도에 지출한 의료비 중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 (총 급여액의 3% 미만 지출한 경우에는 공제 없음)

□ 세액공제액

의료비 세액공제액 = (① + ②)×15% + ③×20%

① Min(㉠, ㉡)

㉠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의 의료비는 제외함)
- 총급여액×3%

㉡ 연 700만원

② 해당 거주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③ 난임 시술비

□ 공제대상 의료비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비

① 진찰, 치료, 질병 예방을 위해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② 치료, 요양을 위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비용

③ 장애인 보장구, 의사의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 또는 임차비용

④ 시력 보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용 (1명당 연 50만원 한도)

⑤ 보청기 구입비용

⑥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 일부 부담금

⑦ 의료기관에서 받는 건강진단을 위한 비용

⑧ 라식, 라섹 수술비용

□ 공제 불능 의료비

① 미용, 성형수술 비용

②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③ 국외 소재 의료기관에 지급한 의료비

④ 근로자가 가입한 상해보험 등에 의하여 보험회사에서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

⑤ 실제 부양하지 아니하는 직계존속이나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는 형제자매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⑥ 의료기관의 진단서 발급비용

⑦ 간병인에게 지급하는 간병비 및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

⑧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원받는 건강 생활 유지비, 출산 전 진료비(고운 맘 카드)로 지급한 의료비

3) 교육비 세액공제

□ 공제대상 및 요건

근로자인 거주자가 해당 연도에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요건 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 합계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

□ 세액공제액

교육비 세액공제액 = Min (① , ②)×15%

① 교육비지출액 - 소득세·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학자금·장학금 수령액

② 한도

- 본인을 위한 일반교육비 : 한도 없음
- 가족을 위한 일반교육비 : 대학생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1명당 연 300만원
- 장애인 특수교육비 : 한도 없음

□ 공제대상 교육비

구분	교육비의 범위
수업료 등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 학원수강료는 공제 불가 ※ 자녀의 교육비를 학자금 대출받아 지급하는 경우 거주자 본인의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불가 ※ 국외 유학 교육비는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 중 우리나라 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만 공제 가능
급식비	학교급식법, 유아교육법, 영유아교육법 등에 따라 급식을 하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및 체육시설(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만 해당)에 지급한 급식비
교과서대금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금
교복 구입비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 (1명당 연 50만원 한도) ※ 초등학교 교복 구입비는 공제 아님
현장학습비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현장체험학습비 (1명당 연 30만원 한도)
방과 후 교육비	① 방과 후 학교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 - 초·중등교육법, 육아 교육법, 영유아 보육법에 따른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및 체육시설(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만 해당함)에서 시행하는 방과 후 학교, 방과 후 과정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 ② 방과 후 학교수업용 도서 구입비 ※ 학교 등에서 구입비 (초·중·고등학교의 방과 후 학교수업용 도서의 구입비는 학교 외에서 구입한 비용도 포함)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근로자(대출자)가 본인의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 ※ 상환 연체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한 금액은 제외

□ **공제 불가능 교육비**

-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국외 근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 등
- 그 밖에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직계비속 등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
- 본인의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하여 '17.1.1. 이전에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 등이 교육비 공제를 받은 경우 교육비 공제대상에서 제외
- 노인대학 수강료 등 직계존속을 위한 교육비는 공제 제외
- 학습지 교육비 공제 제외
- 입사 전 · 퇴사 후에 지출한 교육비 공제 제외
- 외국 대학부설 어학연수 과정 공제 제외

4) 기부금 세액공제

□ **공제대상 및 요건**

기본공제대상자인 근로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음) 등이 해당 연도에 지급한 기부금은 산출세액에서 공제

□ **세액공제액**

법정 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한도 내 금액), 지정기부금(한도 내 금액)의 합계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의 15%, 30%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한도로 공제

□ **공제대상 기부금**

- 정치자금 기부금
 - 종교 기부금
 - 교육비, 연구비, 장학금으로 지출한 기부금
 - 급여에서 일괄 공제한 기부금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동조합비
- 공제 불가능 기부금
- 노사협의회에 납부한 회비
 - 동창회, 향우회 등의 기부금

5) 월세 세액공제

□ 공제대상 및 요건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규모 85㎡(25.7평)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 및 사글세액으로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

□ 세액공제액

월세액(연 한도 750만원)의 10%

□ 공제대상 월세액

-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주거용 오피스텔 및 고시원 월세액
-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더라도 공제 가능

II. 일정 및 서류

1. 연말정산 일정

구분	일정	주요내용	참고
	대상		
연말정산 업무준비	'17.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사는 연말정산 유형을 선택하고 근로자에게 일정 및 정보 제공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성실신고지원 → 연말정산 안내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e-book 제공) 연말정산 및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작성 동영상
	회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자료 확인	'18.1.15.~2.14.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자가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 조회 여부 확인 소득·세액공제 자료 제출 기관은 1.15.~1.18.까지 미제출 자료에 대해 추가 및 수정제출 가능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운영 (1.15.~1.17. 예정)
	제출기관 ⇨ 국세청		
소득· 세액공제 증명자료 수집 및 제출	'18.1.20.~2.14.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근로자가 직접 수집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공제 증명자료를 함께 제출 추가 작성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금공제 ⇨ 기부금명세서 의료비공제 ⇨ 의료비지급명세서 신용카드공제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제공 자료는 근로자 스스로 공제요건 충족 여부 검토 후 사용해야 함 기부금,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추가 작성 서류」를 회사에 제출
	근로자 ⇨ 회사		
공제서류 검토 및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18.1.20~2월 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 공제요건 등 검토 근로자는 누락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등 회사에 추가 제출 회사는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완료하고 원천징수 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 근로자는 원천징수영수증 기재 내용 확인 	회사는 누락한 증명서류 등 발견 시 근로자에게 제출 안내 근로자는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오류 발견 시 회사에 수정 요청 * 연말정산결과 추가납부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4월분 급여 지급시까지 분납 가능
	회사 ⇨ 근로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18.3.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3.12.까지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관할세무서에 제출 기부금명세서와 의료비지급명세서를 홈택스 전자 신고 시 함께 제출 * 기한 내 미제출시 미제출금액의 1%(0.5%) 가산세 부담, 근로자의 ISA 가입 및 금융기관 대출 시 불이익이 발생 회사는 조정환급과 환급신청 중 선택 환급신청의 경우 '18.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3.12일 기한)시 연말정산 환급도 함께 신청 환급신청 후 국세청은 30일 이내 근로소득세 환급 	의료비지급명세서와 기부금명세서는 의료비·기부금 세액공제자 모두 제출 대상 환급세액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 * 연말정산 환급세액은 세무서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음에 유의
	회사 ⇨ 국세청		
종합소득 확정신고	'18.5.1~5.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말정산 시 신고를 잘못된 경우에는 5.31.까지 근로자는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 등을 확인하여 종합소득 확정신고 가능 	
	국세청 ⇨ 근로자		
과다공제 분석안내	9월(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자·부양가족의 종합소득 확정신고 결과를 반영하여 분석한 과다공제 안내서비스 제공 	과다공제 명세는 근로자가 직접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개별 확인
	국세청 ⇨ 회사		

2. 연말정산 시 제출서류

(1) 기본서류

- ✓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 ※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및 해당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 및 표준세액공제만 적용
 - ※ 퇴직연금·연금저축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는 부속서류인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공제 명세서'를 반드시 제출
 - ※ 월세액 및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는 근로자는 부속서류인 '월세액·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를 반드시 제출
- ✓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의료비지급명세서'
- ✓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기부금명세서'
- ✓ 신용카드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2)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등

- ✓ 소득·세액공제가 가능한 해당 지출 비용에 대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증명서류 또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발급받는 소득·세액공제용 영수증
 - ※ '종이 없는 연말정산'을 실시하는 회사의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전자문서로 저장하여 회사에 제출
 - ※ 「편리한 연말정산」의 간편 제출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도는 전산 작성한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온라인 제출
- ✓ 주민등록등본
제출 후 인적공제 등에 대한 변동사항이 없으면 매년 추가로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주택자금공제의 공제항목에 따라 증명서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음
 - ※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

구분	공제대상	준비서류	발급처
주택자금공제	개인 간 차입한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주택자금상환 등 증명서	본인 작성 (집주인 서명)
		주민등록등본	주민센터 또는 민원24
		임대차계약서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본인 소지
		원리금 상환 증명서류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금융기관
장기주택저당차 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증명서 주택가격확인서 건물등기부 등본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및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신용카드 등 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중 학원비 지로 납부액	학원비 지로 납부 영수증	학원 또는 금융기관
투자조합출자공 제	투자조합출자액	소득공제신청서	중소기업청
		출자(투자)확인서	투자조합관리자
우리사주조합출 연금 공제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액 확인서	우리사주조합
의료비		안경 및 콘택트렌즈, 보청기 영수증	구입처
교육비	국외 교육비	납부증명서 재학증명서 부양가족 유학자격 입증서류	교육기관
		교복 구입비	구입처
	어린이집 교육비	보육료 납부 영수증 어린이집 인가증 특별활동비 증빙자료	교육기관
기부금	기부금	법인설립허가증 기부금명세서 기부금영수증 소속증명서 정치자금인 경우 정치자금 영수증	기부금 단체
월세 세액공제	월세액	주민등록등본	주민센터 또는 민원24
		임대차계약서 사본	본인 소지
		월세액 지급 증명서류 (계좌이체 영수증 또는 무통장입금증)	금융기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 가능)

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택스 (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연말정산 간소화

The screenshot displays the Hometax interface for the simplified year-end tax settlement process, organized into five steps:

- step 1. 적용월 선택** (Application month selection): Includes a dropdown for the year (2014) and buttons for '전체선택' (All selection) and '선택해제' (Cancel selection). A calendar shows months from 1월 (Jan) to 6월 (Jun).
- step 2. 각 소득·세액공제 항목 클릭** (Click each income and tax credit item): Shows a total income of 20,066,620 and buttons for '의료비' (Medical Expense), '교육비' (Educational Expense), and '기타' (Others).
- step 3. 내용확인** (Content confirmation): Includes a note '(중력하지 않을 자료는 선택해제)' (Cancel selection for data not to be highlighted) and a table for '상호' (Company) with checkboxes and company names like '생명보험(주)'. A '통장/증권번호' (Account/Securities Number) column is also present.
- step 4. 공제신고서 작성** (Create deduction declaration form): Includes instructions on selecting oneself and family members, calculating estimated tax, and downloading/printing the form.
- step 5. 회사에 제출** (Submit to company): Includes options for '출력물, PDF, 온라인 제출' (Printout, PDF, Online submission).

※ 일부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야 함

✓ '18.1.18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수정제출 가능

- 영수증 발급기관이 기한 내 제출한 자료는 '18.1.15부터 조회할 수 있으나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수집해야 하는 어려움을 덜고자 개통 이후 1월 18일까지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1월20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제공되므로 일부 소득 및 세액공제 자료가 변경될 수 있음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운영

-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의료비 세액공제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1월 15일부터 1월 17일까지 해당 의료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홈택스(신청/제출 → 연말정산 간소화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
- 접수된 자료는 국세청이 의료기관에 확인하여 자료제출을 재차 요청하며, 의료기관이 자료를 추가 제출할 경우 1월 20일부터 변경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음
 - ※ 의료기관이 자료를 1월 17일까지 제출하지 않아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을 경우 해당 의료기관으로부터 직접 증명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여야 함

✓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 동의 신청

- 부양가족의 공제자료를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양가족이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본인 인증 수단이 있는 경우는 공인인증서·휴대폰·신용카드, 본인 인증 수단이 없

- 는 경우는 온라인 신청·팩스 및 세무서 직접방문을 이용하여 동의 신청하여야 함
- 만 19세 미만 자녀의 경우 동의 절차 없이 「자녀 자료 조회신청」에 등록하면 해당 자녀의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조회할 수 있음
 - ※ 2017년 귀속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중 성년이 된 '98년 출생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해당 자녀의 자료조회가 종료되므로 자녀가 직접 제공 동의를 신청하여야 함

5. 세무사 사무실로 보내주실 자료

- ✓ 세대주 여부
- ✓ 부양가족 인적사항
- ✓ 무주택 여부
-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PDF 자료
- ✓ 2017년 이직한 경우 - 이전 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간소화 자료 월별로 저장
- ✓ 그 외 기타 증빙자료
- ✓ 소득공제신고서

Ⅲ. 특수한 경우 연말정산

1. 비거주자 연말정산

(1)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은 거주자, 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계산 방법이 달라지며,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2 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에 해당함

✓ 외국인 근로자 : 해당 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

(2) 연말정산 방법

✓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 다만,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 특별소득공제, 자녀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는 불가

2.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의 납세 편의 제고를 위해 원천징수세액을 '간이세액표'와 단일세율(19%) 중 선택하여 원천징수 할 수 있음

✓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 시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소득세와 관련된 모든 공제·감면 및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음

✓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제외 대상자

- 고용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근로자

- 다만, 조세감면대상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특수관계인도 과세특례 적용 가능

✓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 국내 근무 시작일부터 5년간만 적용하되, '14년 이전에 국내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18.12.31.까지는 과세특례 계속 적용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른 지역본부(헤드쿼터 인증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근로 시작일부터 5년간 적용

✓ 외국인 기술자의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 면제 규정 개정

-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세액감면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에 한해 적용되므로 국외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지급 받은 대가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구 분	종 전		개 정 (2015.1.1.부터)
	2009.12.31.까지	2010.1.1.부터	
대 상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도입대가에 대해 조세가 면제되는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는 외국인근로자 기술집약적산업·과학계 정부출연연구 기관 연구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의해 기술을 제공하는 자 고도기술수반사업 영위로 조세 감면되는 외투기업에 고도기술을 제공하기 위해 국내근로하는 외국인 기술자 기술집약적산업·과학계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기술을 제공하는 자 일정 외투기업의 연구개발 시설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감 면 혜 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제공 후 최초 5년간 근로소득세 100%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제공 후 최초 2년간 근로 소득세 50%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좌동
외국인 기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인 및 내국인 중 재외국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인만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좌동

3.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부부가 모두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인 부부를 가정)

공제항목	맞벌이 배우자	배우자 외 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해 기본공제 불가능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이 공제 가능 (중복 공제 불가능)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배우자는 추가공제 불가능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신청한 근로자가 추가공제를 적용받음
자녀 세액공제	-	본인이 기본공제 받는 자녀(입양자, 위탁 아동 포함)에 대해서 배우자가 자녀 세액 공제 불가능
보험료 세액공제	본인이 계약자이며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서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부 모두 공제 불가능 * 다만,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이 공제 가능	본인이 기본공제 받는 자녀의 보험료를 배우자가 지급하는 경우 부부 모두 보험료 세액공제 불가능
의료비 세액공제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한 본인이 공제 가능	부부 중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금액 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본인이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불가능	
기부금 세액공제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은 배우자가 공제 불가능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해당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 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가족 카드를 사용한 맞벌이 부부는 카드 사용자 기준으로 각각 공제(결제자 기준이 아님)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해당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 ✓ tip 일반적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는 부부 중 근로소득금액이 높은 쪽이 유리
 - 단, 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이므로 부부가 과세표준이 비슷하거나 한계세율 근처에 있는 경우 인적공제를 적절하게 배분하는 경우 절세가 가능한 경우도 있음
 - 최저사용금액이 있는 의료비(총급여액 3%), 신용카드 등(총급여액 25%)의 경우 근로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할 경우 절세가 가능한 경우도 있음

4. 중도 퇴직자 연말정산

- ✓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급여를 처음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
- ✓ 연도 중 퇴직하여 다른 근무지에 입사한 경우 퇴직한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하여 새로운 직장에서 종(전)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 ✓ 퇴직 시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공제 가능(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가능)
- ✓ 연말정산을 한 후 퇴직한 직원에게 상여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는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함